



디지털 금융 정책 동향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2024. 4. 4.)

2022. 1. 금융 마이데이터가 시행된 이후 사업자(69개사) 및 이용자(1억 1,787명)수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으나 (24. 2.말 기준), 안정적인 서비스 출범에 중점을 두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및 활용범위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4. 4. 4. 금융위원회는 현행 마이데이터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마이데이터2.0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주요 내용

가.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 **전체 금융자산 조회:** 현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 및 개별 상품을 선택해야 하여 이용자의 자산내역 등이 불완전하게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이용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전송을 간소화하고 조회된 내역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보유 자산 전체에 대하여 열람·제외·계좌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 **결제내역 상세 정보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024. 9. 시행 예정)으로 선불업자의 최종판매자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동법 제37조 제5항),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결제내역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결제·상위 PG사를 통해 최종판매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결제금액을 제공받게 되며, 그 외 거래품목 등 세부 정보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 **오프라인 가입, 조회, 활용:** 온라인 채널을 넘어, 대면 점포에서도 마이데이터 가입, 조회, 활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용자의 요청시 또는 별도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마이데이터의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영업 행위규칙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겸영·부수업무 유연화:** 현행 겸영·부수업무는 사전신고제로 운영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넓히고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빠른 신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겸영업무의 경우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2주 이내 사후 보고로 전환합니다. 부수업무의 경우 사전 신고는 유지하나, 업무범위에 '금융위에 신고되어 공고된 업무'가 추가되며 원칙적으로 기신고된 업무로서 금융위에 공고된 업무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결합기준 명확화:** 마이데이터 사업자 보유 정보와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 간의 결합기준을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힙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는 경우)** 사업자 보유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의 목적이 공통되는 업무를 위해서는 실명으로 자체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제공 동의까지 받았다면 결합한 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업자 보유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외로 이용할 경우에는 가명처리 후 자체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결합된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어카운트인포 연계:**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계좌 조회, 열람뿐만 아니라 해지 등 관리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제공)와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합니다.
- **동의 절차 간소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중복되는 2단계 전송요구 절차(목록 및 상세정보)를 단일화하고, 전송요구와 함께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본인정보 관리 강화:** 「마이데이터 종합앱」(신정원)을 구축하고 개별 마이데이터 앱과 연계함으로써, 각 앱을 통해 ① 전체 가입 내역의 조회 ② 제3자 제공 현황의 조회 및 제공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이데이터 종합앱」에서 가입 취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가입 유효기간 연장:** 현재 1년으로 제한된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청소년 이용 개선:** 신용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은 마이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라.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 **제3자 제공시 보안 강화:** 금융보안원에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위 시스템을 통해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보안을 강화합니다.
- **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이용자가 전송된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정보 관리권을 강화합니다.
-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이용자가 6개월간 미접속 시 정기적인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1년 동안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2. 향후 전망

이번에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은 기존에 지적되어왔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의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안심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 혁신 서비스의 출현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돕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2.0의 추진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신용정보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중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향후 법령 및 제도 개편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2.0은 전체 금융자산 조회, 결제내역 상세 정보 제공, 경영·부수업무 유연화, 동의절차 간소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강하나 관련 시스템 및 보호장치 구축(정보 결합기준 준수, 어카운트인포 등과의 시스템연계, 마이데이터 정보 삭제정책 정비 등) 등 회사가 도입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